

이 투자설명서는 유리스몰뷰티주식증권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스몰뷰티주식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투자신탁명 :

2. 자산운용회사명 : 유리자산운용(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 02-2168-7900)

3. 판매회사명

판매회사명	주 소	전화번호
우리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1544-0000
굿모닝신한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1588-0365
하나대투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1588-3111
부국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1588-7744
동부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	1588-4200
한국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1544-5000
키움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1544-9000
유진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1588-6300
현대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1588-6611
한국외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81	1544-3000
CJ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5	1588-7171
대우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	1588-3322
농협중앙회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1	1588-2100
한화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1544-8282
교보생명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	1588-1001
골든브릿지증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2	1566-0900
대신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1588-4488
SK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	1588-8245
대한생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1588-6363
이트레이드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2	1588-2428
한양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1	3770-5000
금호종합금융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27	1588-1000
HMC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3	1588-6655
IBK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	1588-0030
LIG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1544-7600
미래에셋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	1588-9200
애플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5	1600-0777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 않습니다.

4. 작성기준일 : 2008년 9월 17일

5. 투자설명서 비치 및 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 주소

: 판매회사 영업점 및 유리자산운용(주) 홈페이지

투자설명서 요약(핵심설명서)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 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2. 신탁계약기간
3. 분류
4. 자산운용회사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6. 수탁고 추이
7. 해지사유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2. 주요 투자전략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 가. 연평균 수익률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IV.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2. 환매
3. 이익 등의 분배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2. 투자위험
3. 투자대상
4. 투자제한

II. 자산의 평가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 시 중개회사선정기준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2. 환매관련 유의사항
3.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재무내용
4. 운용자산규모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2. 잔여재산분배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4. 손해배상책임
5. 재판관할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2. 수시공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I 투자신탁의 개요(☞본문 4 쪽)

1. 명 칭 : 유리스몰뷰티주식증권투자신탁
2. 신탁계약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3. 분 류 : 증권투자신탁, 주식형·추가형·개방형·종류형
4. 자산운용회사 : 유리자산운용(주)

II 투자정보(☞본문 4~6 쪽)

구 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되어 있는 중소형주 중 업선된 종목에 투자 하여 시장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
2. 주요 투자전략	- 중소형 가치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Small cap premium을 추구 - 자산배분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현장리서치에 의한 종목발굴로 초과수익 추구에 주력
3. 주요 투자위험	- 「 예금자보호법 」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신탁의 재산은 시장위험, 개별종목위험, 유동성위험 및 파생상품투자에 따른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6 등급 중 1 등급으로 극히 높음 - 중소형 주식시장의 전망을 밝게 보고 주가지수 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투자신탁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 가치를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08. 3. 12)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인종익	45 세	본부장	8 개	1,870 억	성균관대 경영학 주식운용 : 와이즈에셋자산운용, 당사 03년 7월~현재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 1본부 담당이며, 상기인은 이 본부를 총괄하는 책임 운용전문인력임

7.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 과거성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음

연도	최근 1년 (07.1.1~07.12.31)	최근 2년 (06.1.1~07.12.31)	최근 3년 (05.1.1~07.12.31)	설정일 이후 (04.8.16~07.12.31)
투자신탁*	29.05%	20.16%	47.81%	52.53%
비교지수*	29.57%	16.20%	26.01%	27.65%

* 투자신탁 = 종류 C 수익증권

* 비교지수 = KOSPI 90% + CD91 10%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본문 6~8 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분 종류		지급비율(연간, %)			
		종류 A	종류 C	종류 C1	
수익증권 판매 기준		제한없음	제한없음	간접투자기구, 기관 투자자 및 100억 이상 개인 또는 500억 이상 법인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¹⁾	납입금액의 1%	없음	없음	
	환매수수료¹⁾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순자산총액 기준)	보수	운용회사	연 0.762%	연 0.762%	연 0.762%
		판매회사	연 0.750%	연 1.140%	연 0.000%
		기타	연 0.045%	연 0.045%	연 0.045%
		합계	연 1.557%	연 1.947%	연 0.807%
	기타비용	연 0.020%			
총보수·비용비율²⁾		연 1.577%	연 1.967%	연 0.827%	

- 주 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90일 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2)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 수준을 나타냄
 3) 기(2007년 5월 10일 전) 발행된 수익증권은 “종류 C 수익증권”으로 봄

2.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주식매매차익 등 제외)에 대하여 소득세등(2007.1 월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3. 매입·환매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시 분~오후 시 분) 중에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이후
매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2 영업일(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 4 영업일(D+3) 에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 4 영업일(D+3) 에 환매대금을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 _____ (접포명) 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 _____ (은)는
 (고객성명) _____ 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_____ 년 월 일
 판매직원 / 취득권유인 _____ 서명 또는 (인)

I. 투자신탁의 개요

1. 투자신탁의 명칭
2. 신탁계약기간
3. 분류
4. 자산운용회사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유리스몰뷰티주식증권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증권투자기구,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유리자산운용(주)
 2004년 8월 16일 최초설정
 2005년 6월 7일 매입 및 환매방법 변경
 2007년 5월 10일 “종류형”으로 변경
 2007년 8월 1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인하
 2007년 8월 6일 투자대상 변경
 2007년 9월 11일 종류 C1 추가
 2008년 4월 29일 투자대상 변경(주식선물추가)

6. 수탁고 추이

• 종류 A : 해당사항 없음
 • 종류 C 수익증권 (단위 : 억, %)

연 도	현 재 (07.12.31)	6개월전 (07.6.30)	1년전 (06.12.31)	1년6개월전 (06.6.30)	2년전 (05.12.31)	2년6개월전 (05.6.30)
수탁고	1,111	1,317	493	464	965	154
증가율	-15.6	167.1	6.3	-51.9	526.6	-

* 수탁고 = 순자산총액

* 증가율은 “6개월 전 수탁고 대비 증가율”임

7. 해지사유

•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아래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②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③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II. 투 자 정 보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주식형 투자신탁으로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되어 있는 중소형주 중 업선된 종목에 투자하여 시장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운용사는 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운용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주요투자전략

• 신탁재산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며 주식중에서도 중소형 가치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Small cap premium을 추구합니다. 자산배분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현장리서치에 의한 종목발굴로 초과수익 추구에 주력합니다. 또한 장기적 절대수익 축적을 목표로 시장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낮추고 일정비중은 현금 및 유동성자산으로 보유합니다.
 ※ 상기의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전략이 반드시 유효하게 투자목적 실현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주요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의 재산은 시장위험, 개별종목위험, 유동성위험, 파생상품투자에 따른 위험 등에 노출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손실의 한도가 제한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을 통해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한 경우에도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 상세 투자위험에 대해서는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투자 전략 및 투자위험 중 2.투자위험 부분의 내용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개별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에 노출되는 펀드로서 위험수준을 기준으로 한 상품분류상 6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높은 위험을 감안 시 투자비중은 투자자의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중 일정부분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급표]

등급	등급 내용	등급 기준
1등급	극히 높은 위험	• 고위험 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여 장기에도 위험이 보상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예)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펀드, 코스닥 전용 펀드, 이머징마켓투자펀드, 부동산개발펀드, 원금의 전액손실이 가능한 장외파생상품펀드
2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단기적으로 손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장기투자시 위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경우 예)일반적인 순수주식형
3등급	높은 위험	• 2등급과 4등급의 중간 수준으로서 신탁재산의 상당부분을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예)주식혼합형, 손실한도가 제한된 장외파생상품펀드
4등급	중간 위험	• 단기적으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투자대상의 고유한 속성으로 인해 장기투자 시 손실의 회복이 거의 확실한 경우 예)채권혼합형 등, 잔존만기 5년 이상의 채권형 펀드
5등급	낮은 위험	• 중장기 투자시 손실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예)일반 채권형, 지수연계채권형, 차익거래추구형 등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변동성과 신용위험이 매우 낮은 자산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경우 예)MMF

※ 상기 제시된 투자위험 수준은 이 투자신탁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예측된 것입니다.

실제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위에서 제시된 위험수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1) 기준가격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주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2) 산정주기 : 매일 계산

(3) 공시시기 : 산정일의 다음 영업일의 영업개시 전에 공고 및 게시

(4) 공시방법 :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등에 공고 또는 게시 및 단말기로 조회

(5) 공시장소 :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홈페이지 및 자산운용회사의 홈페이지, 자산운용협회 등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08년 3월 12일)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운용중인 다른 운용자산규모	
인종익	45세	본부장	8개	1,870억	성균관대 경영학 주식운용 : 와이즈에셋자산운용 당사 03년 7월~현재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1본부 담당이며, 상기인은 이 본부를 총괄하는 책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 추이

(1) 연평균 수익률 (종류 C 수익증권)

기간	최근 1년 (07.1.1~07.12.31)	최근 2년 (06.1.1~07.12.31)	최근 3년 (05.1.1~07.12.31)	설정일 이후 (04.8.16~07.12.31)
투자신탁	29.05%	20.16%	47.81%	52.53%
비교지수	29.57%	16.20%	26.01%	27.65%

(2) 연도별 수익률 추이 (종류 C 수익증권)

기간	최근 1년 (07.1.1~07.12.31)	최근 2년 (06.1.1~06.12.31)	최근 3년 (05.1.1~05.12.31)
투자신탁	29.05%	11.88%	123.68%
비교지수	29.57%	4.20%	48.18%

* 종류A 수익증권 : 해당사항 없음

* 비교지수 = KOSPI 90% + CD91 10%

※ 과거의 투자실적이 현재 또는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회계자료는 자산운용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Ⅲ.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C	종류 C1	
수익증권 판매 기준	제한없음	제한없음	간접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및 100억 이상 개인 또는 500억 이상 법인	
선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매입시
환매수수료	90일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C	종류 C1	
자산운용회사 보수	연 0.762%	연 0.762%	연 0.762%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판매회사 보수	연 0.750%	연 1.140%	연 0.000%	
수탁회사 보수	연 0.030%	연 0.030%	연 0.030%	
일반사무관리 보수	연 0.015%	연 0.015%	연 0.015%	
기타비용 ^{주1)}	연 0.020% (실비)			사유발생
총 보수·비용 비율	연 1.577%	연 1.967%	연 0.827%	

주)기타비용은 회계감사비용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직전회계년도의 비용기준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는 신탁회계에서 비용계정이 아닌 취득원가에 포함되므로 제외하였습니다.
 주식매매수수료 등을 포함한 비용비율에 관하여는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간 부담수수료 예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투자기간	종류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 등	종류 A	257,700원	573,100원	888,500원	1,677,000원
	종류 C	196,700원	590,100원	983,500원	1,967,000원
	종류 C1	82,700원	248,100원	413,500원	827,000원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시 환급받게 되므로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해 여 소득세 등 (2007년 1월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장주식, 벤처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기 세율은 정부정책의 변경 등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Ⅳ.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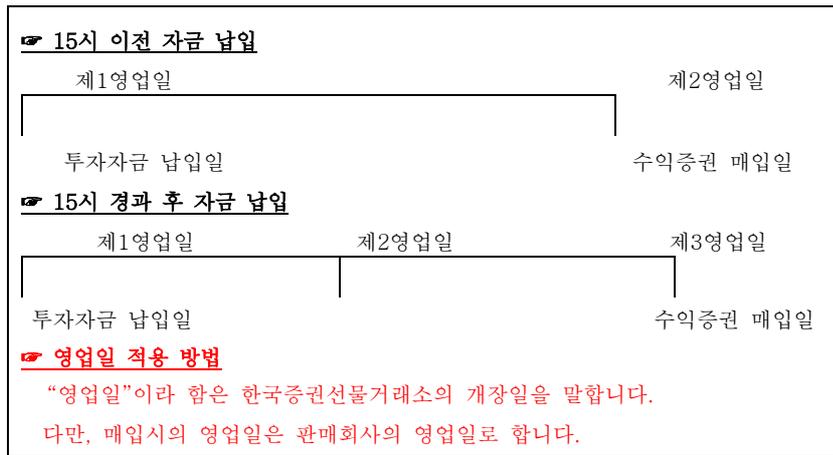
[매입 방법]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투자자금, 신분증, 도장(개인일 경우 서명도

가능)을 지참한 후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수익증권 매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입시 기준가격]

- 수익증권 취득을 위해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매입가격이 결정됩니다.
 - (1) 15시(오후3시) 이전 : 자금 납입일 익영업일에 공시되는 기준가격
 - (2) 15시(오후3시) 경과 후 : 자금 납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 (3) 단, 최초 설정일의 판매가격은 1,000좌당 1,000원
 - (4) 매입청구 취소(정정) : 매입청구의 취소(정정)은 당일 15시(오후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3시) 경과 후 매입청구는 당일 17시(오후5시) 까지 가능합니다.
- ※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간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V.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매입관련 유의사항’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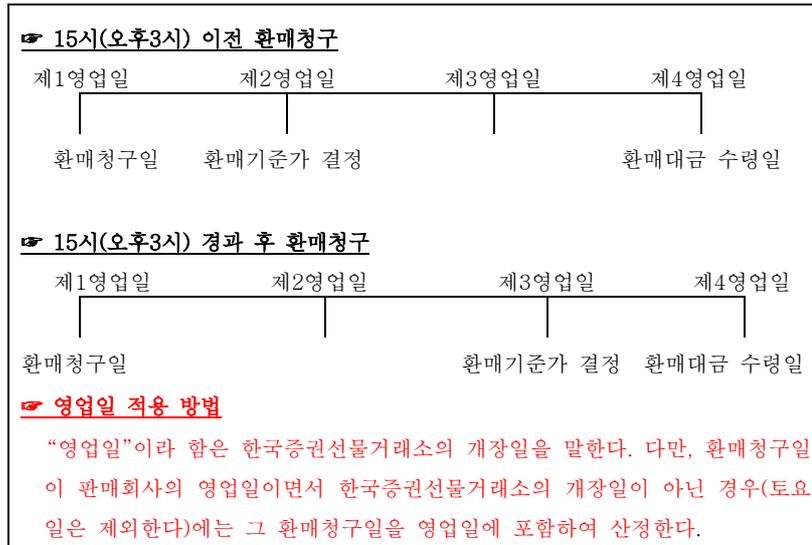
[환매방법]

- 수익자는 언제든지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환매청구방법
수익증권을 판매사에서 매입한 경우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영업점에 환매청구
판매사가 해산/허가취소/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환매청구에 응할수 없는 경우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환매청구
자산운용회사의 해산 등으로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탁회사에 직접 환매청구
실질수익자인 경우	판매회사를 통해 증권예탁원에 환매청구
현물보유수익자인 경우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사를 경유하여 자산운용 회사에 수익증권을 제출

[환매시 기준가격]

- 환매를 청구한 시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1) 15시(오후3시) 이전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2) 15시(오후3시) 경과 후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3) 환매청구의 취소는 환매를 청구한 당일 15시(오후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15시(오후3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환매를 청구한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 (4) 환매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나, 투자신탁 수익자의 전원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간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환매수수료]

-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합니다.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1)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 법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탁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매제한]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3. 이익 등의 분배

-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V.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환매관련 유의사항’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익분배 원칙]

- (1) 이익분배 : 자산운용회사는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 하여야 합니다.
- (2)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채매수 :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분배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분배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V.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분배관련 유의사항’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1) 주식투자

- 이 투자신탁은 기업의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 중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극대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투자 종목의 선정은 금융공학 시스템(주식/부도/부도확률/배당 스코어링 모형 등)을 통한 투자 대상 종목 중 기업탐방을 통한 가치분석, 성장성 예측 등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엄선된 중소형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종목은 종목선정기준에 최소 3항목 이상 만족하는 종목으로 선정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치

- ▷ 진입시점 : 거래소 기준에 의한 중,소형주
- ▷ PER 8 미만, PBR 1.2 미만인 종목 (시장대비 3% 이상 저평가)
- ▷ 시가총액 20% 이상의 잉여현금 보유 기업
- ▷ Free Cash Flow가 (+) 일 것
- ▷ Free Cash Flow 성장률이 GNP 성장률보다 높을 것
- ▷ 최근 3년간 EPS 증가가 (+) 일 것
- ▷ EPS Growth/PER 가 1 이상일 것
- ▷ ROE가 시장금리의 1.5배 이상일 것
- ▷ 지적 자본이 많을 것 (Hidden Value, Brand Value) 등

나. 성장성

- ▷ 업계 내에서 Market Share 확대 가능성이 클 것
- ▷ 매출액 성장률이 경상 GNP 성장률보다 높을 것
- ▷ 성장의 모멘텀이 있을 것
- ▷ 저 성장시 5년 이상 장기간 사업의 안정성이 예상되는 기업 등

다. 경영자

- ▷ 정직, 성실하며 주주가치 극대화에 노력할 것
- ▷ 사업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해안이 있으며 고객을 중시하는 회사일 것

(2) 채권 및 어음 등의 투자

- 이 투자신탁은 환매대금 확보 등을 위하여 채권과 기업어음, 자산유동화 증권 등의 투자와 유가증권 대여, 30일 미만의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단기 1년 이내) 등의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요인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투자위험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관련법령은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고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주식 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 위험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신용위험	주식, 채권, 파생상품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신탁재산의 급격한 가치하락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유가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급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기타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약관에 따라 일정한 경우 환매연기나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주식	60% 이상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중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성질을 구비한 것(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2)채권	40% 이하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및 사모사채권을 제외한다)
(3)어음	40% 이하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 · 매출 또는 증정한 어음 · 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3-이상인 것
(4)자산유동화채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5)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일자율 약정 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함
(6)수익증권 등	5% 이하 (30% 이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
(7)투자증권 대여	50%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의 대여
(8)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기준 신탁재산의 15% 이하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사지수옵션, 주식선물 ,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9)환매조건부채권매도	50% 이하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10)투자증권의 차입	20% 이하	(1)~(4)에 해당하는 투자증권의 차입
(11)수탁회사 고유재산과 거래	-	법시행령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12)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	단기대출 :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금융기관예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p>(1)~(5)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용을 위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1)~(5)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4. 투자제한

- (1)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법시행령제77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간접투자자산
운용법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또는 채무증서, 동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또는 채무증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간접투자
자산운용법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한다)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회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 주식의 증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
장에서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증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
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
 -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라.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 마.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 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 사.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가격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다.
 - 아.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2) 투자신탁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일부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
게 3. 투자대상에 (6)~(10), 가~사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3)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로부터 1월간은 주식및채권관련파생상품, 나.본문 및 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II. 자산의 평가

1. 자산의 평가

- (1)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2)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다.
 - 가. 상장주식 또는 등록주식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
 - 나. 비상장주식 또는 비등록주식 :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인 제공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다. 장내파생상품 :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등이 발표하는 가격
 - 라. 상장채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한다)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마. 비상장채권(전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한다)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바. 외화표시 유가증권으로서 상장주식 또는 상장채권 :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 사. 간접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아. 외국간접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자.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차. 비상장 외화표시유가증권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3)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자전환주식 등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 등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 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1. 투자증권거래

- (1) 선정시 고려사항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질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 ②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 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 다. 마케팅비용
 - 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 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 매매대가 이익이라 함은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선정절차
 - 운용담당자는 상기 원칙에 의하여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을 세워야 함
 -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은 준법감시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운용담당자는 매매담당자에게 상기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중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지정할 수 없음

2. 장내파생상품거래

위“1.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매입방법]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투자자금, 신분증, 도장(개인일 경우 서명도 가능)을 지참한 후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수익증권 매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입시 기준가격]

• 수익증권 취득을 위해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매입가격이 결정됩니다.

(1) 15시(오후3시) 이전 : 자금 납입일 익영업일에 공시되는 기준가격

(2) 15시(오후3시) 경과 후 : 자금 납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3) 단, 최초 설정일의 판매가격은 1,000좌당 1,000원

(4) 매입청구 취소(정정) : 매입청구의 취소(정정)은 당일 15시(오후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3시) 경과 후 매입청구는 당일 17시(오후5시) 까지 가능합니다.

※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간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2. 환매관련 유의사항

[환매방법]

• 수익자는 언제든지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환매청구방법
수익증권을 판매사에서 매입한 경우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영업점에 환매청구
판매사가 해산/허가취소/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환매청구에 응할수 없는 경우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환매청구
자산운용회사의 해산 등으로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탁회사에 직접 환매청구
실질수익자인 경우	판매회사를 통해 증권예탁원에 환매청구
현물보유수익자인 경우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사를 경유하여 자산운용 회사에 수익증권을 제출

[환매시 기준가격]

• 환매를 청구한 시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15시(오후3시) 이전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2) 15시(오후3시) 경과 후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3) 환매청구의 취소는 환매를 청구한 당일 15시(오후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15시(오후3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환매를 청구한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4) 환매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나, 투자신탁 수익자의 전원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간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환매수수료]

•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합니다.

(1)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탁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증권의 환매연기사유 및 절차]

(가)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

- ㄱ.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ㄴ.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ㄷ.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 ㄱ. 투자증권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ㄴ.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ㄷ.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합니다.

(가)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나)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 재개시 환매금의 지급방법

(다)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리방법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으며,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합니다.

(가)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ㄱ.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ㄴ.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ㄷ.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금의 지급방법

•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그 통지를 증권예탁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가)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나)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자산운용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사유 및 절차]

•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내용을 판매회사, 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 및 간접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분배관련 유의사항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하며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간접투자증권으로 분배합니다.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탁약관 제 43 조에 의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새로운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자산운용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신탁약관 제14조 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환금 등의 지급]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약관 제 42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약관 제 43 조 내지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부터 5 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 (1) 회사명 : 유리자산운용주식회사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 (3) 연 혁 : 가. 1998.10 설립
 - 나. 1999.08 자산운용업 등록 (자본금 85 억) - 금융감독위원회
 - 다. 2000.03 투자자문업 등록 - 금융감독위원회
 - 라. 2000.05 투자일임업 등록 - 금융감독위원회
 - 마. 2007.04 현재 자본금 153 억

2. 주요 업무

- (1)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업무를 수행한다.
- (2) 업무의 위탁 : 투자신탁재산의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인 ㈜의환펀드서비스에 위탁하였습니다.
- (3) 업무의 위탁 관련 책임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업무의 외부 위탁과 관련된 책임은 본 업무를 위탁한 유리자산운용(주)에게 있습니다.
- (4)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투자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5) 자산운용회사가 '(4)'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6)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최근 2개 사업

연도 요약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항 목	대차대조표		항 목	손익계산서	
	제8기 '06.03.31	제9기 '07.03.31		제8기 '06.03.31	제9기 '07.03.31
유동자산	9,644	16,734	영업수익	6,578	9,321
고정자산	2,701	3,662	영업비용	4,873	6,122
자산총계	12,344	20,396	영업이익	1,705	3,199
유동부채	673	1,336	영업외수익	207	13
고정부채	17	231	영업외비용	41	22
부채총계	690	1,567	경상이익	1,870	3,190
자본금	10,300	15,300	특별손익	0	0
결손금	1,130	3,331	법인세차감전	539	975
자본잉여금	224	198	순이익	0	0
자본총계	11,654	18,829	당기순이익	1,331	2,215

* 상기자료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필한 자료로서 감사 의견은 적정임.

4. 운용자산규모

2007년 12월말 기준

(단위 : 억)

종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	재간접	총계
수탁고	18,138	7,655	4,481	793	4,609	98	35,774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소 속	성 명	나 이	주요경력	비고
주식 1 본부	인종익	1964년생	성균관대 경영학 와이즈에셋	팀운용총괄

- 2008년 3월 12일 현재 주식 1 본부 총 운용규모 : 8개 펀드 / 1,870 억원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 1 본부 담당이며, 상기인은 이 본부를 총괄하는 책임 운용전문인력임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혁
굿모닝신한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www.goodi.com
	1984.04. 쌍용투자증권 설립 1999.05. 굿모닝증권으로 상호변경 2002.08. 굿모닝신한증권 출범
부국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www.bookook.co.kr
	1954.08. 설립 1997.05. 수익증권 매매업무 인가
하나대투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www.hanaw.com
	1968.12. 설립
동부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 www.winnet.co.kr
	1982.12. 국민투자금융 설립 1988.09. 동부투자금융 상호변경 1991.06. 증권업 전환
우리투자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2 www.wooriwm.com
	1954.08. 설립
한국투자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www.truefriend.com
	1968.12. 설립 2005.06. 동원증권, 한투증권 합병
키움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www.kiwoom.com
	2000.01. 창립 2000.07. 수익증권 판매회사 등록 2004.04. 코스닥시장 등록 2006.04. 동경사무소 개소
유진투자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www.eugenefn.com
	1954.05. 창립 1987.08. 거래소시장 상장 1996.05. 수익증권 판매업무 개시 2003.12. 투자일임업 등록
현대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www.youfirst.co.kr
	1962.06. 창립 1975.09. 거래소시장 상장 2006.02. 신용등급 상향 평정(A)
한국의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81 www.keb.co.kr
	1967.01. 창립 1994.04. 증권거래소 상장 2007.01. 인도네시아 저까랑 출장소 개소
CJ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5 www.cjcyber.com
	1989.10. 창립 1997.09. CJ그룹 편입 2004.08. 상호변경(제일투자증권 -> CJ투자증권)
대우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 www.bestez.com
	1970.09. 창립 2006.07. 일본 동경연구소 개소
농협중앙회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1 www.nonghyup.com
	1961.06 농업협동조합, 농협은행 통합 1999.09 수신고 50조원 달성 2000.01 ISO9001 인증
한화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www.koreastock.co.kr
	1962.07 창립 1986.11 증권거래소 상장 2003.03 중국 상하이사무소 개설 2006.12 기업신용등급 상향(A-)
교보생명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 www.kyobo.co.kr
	1958.08 창립
골든브릿지증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2 www.bridgefn.com
	1954.08 창립 1988.09 증권거래소 상장 2005.09 골든브릿지금융금융그룹에 편입
대신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www.daishin.co.kr
	1962.07 창립 1975.10 증권거래소 상장

SK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0	www.priden.com
	1955.07 창립 2004.05. 투자일임업무 인가	
대한생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www.korealife.com
	1946.09 창립 2002.12 한화그룹으로 편입	
이트레이드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2	www.etrade.co.kr
	1999.12 창립 2001.03 펀드 온라인 판매 개시	
한양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1	www.hygood.co.kr
	1956.03 창립 2004.06 투자일임업 등록 2007.02 하이굿 POWER 오픈	
금호종합금융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27	www.ekumhobank.com
	1974. 06 창립 1995. 05 상호변경 2008. 04 간접투자증권 판매회사 등록	
HMC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3	www.hmcib.com
	1955.07 창립 1996.09 납입자본금 550억 2008.04 상호변경(신흥->현대차IB증권)	
IBK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	www.ibks.com
	2008.05 창립	
LIG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www.ligstock.com
	2008.07 창립	
미래에셋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	www.miraeasset.co.kr
	1999.12 창립	
에플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5	www.applefn.com
	2008.06 창립	

2. 주요업무

- (1) 수익증권의 판매업무(수익증권 모집 및 매출)
- (2) 수익증권의 환매업무
- (3) 수익증권 교부업무
- (4)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
- (5) 각종장부/서류 등의 비치, 수익자 제공 및 광고 업무
- (6)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항

[의무]

- (1)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2) 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하고 판매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3) 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4) 판매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책임]

- (1) 판매회사가 법령, 투자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2) 판매회사가 (1)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자산운용사, 수탁회사 등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매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Ⅲ.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 (1) 명칭 : 주식회사 하나은행
- (2)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 (3) 연혁
 - 가. 1959.12.01 설립
 - 나. 자본금 : 9,872억원
 - 다. 총 자산 : 119 조

2. 주요업무

-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2)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3)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4)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5)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의무 및 책임]

- (1)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 또는 회사정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회사 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수탁회사는 회사 재산의 운용에 관한 회사의 지시가 법, 회사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3) 수탁회사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 (4) 수탁회사가 (1)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탁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 (1) 회사의 명칭 : (주)외환펀드서비스
- (2) 회사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 (3) 회사의 연혁
 - 가. 설립일 : 2003년 4월 1일
 - 나. 자본금 : 25.5억원

2. 주요업무

[의무 및 책임]

- 투자신탁재산의 기준가격 계산업무
- (1)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투자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2)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법령, 투자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수탁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업무를 위탁한 회사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구 분	한국채권평가(주)	KIS채권평가(주)	나이스채권평가(주)
설립일	2000.05.29	2000.06.20	2000.06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등록일	2000.07.01	2000.07.01	2004.06
연락처	02-399-3350	02-3770-0400	02-739-3590
자본금	50억원	30억원	55억

2. 주요 업무내용

-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에게 제공합니다.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 (1)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2) 증권예탁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3)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2)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4)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2)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3)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로부터 6월간 비치하여야 합니다.

2. 잔여재산분배

- (1)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의 지급
 - 가.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할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나. 수탁회사가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판매회사는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 투자신탁의 해지시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투자신탁재산으로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라.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함)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

- (1)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2) (1)의 규정에 의한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투자신탁재산명세서
 - 나. 기준가격대장
 - 다.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라.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1)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투자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2) 자산운용회사가 가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 (1)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회사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 (2)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 호에 관한 사항**
- (1)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유리자산운용 인터넷 홈페이지(www.yurieasset.co.kr) 또는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다. 법시행령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감사보고서]

회계감사인은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대차대조표

나. 손익계산서

다. 기준가격계산서

라.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자산운용보고서]

(1)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 보고서]

(1)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에 의합니다.

[기타 장부/서류]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수시공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 및 금융감독원장의 명령,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회사자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사항

[약관 변경]

(1) 자산운용회사가 이 신탁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신탁약관의 내용이 표준신탁약관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산운용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표준신탁약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후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 지체없이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증권에탁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 의 통지

나. 그 외의 사항 :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 이상 공고

(3) 다음 각호의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가.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나. 수탁회사의 변경

다. 투자신탁기간의 변경

라.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 설정시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본 신탁약관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마.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바.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4)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5) 수익자가 (2)에 의한 공시일로부터 1월 이내 또는 (4)에 의한 게시기간(이하 “이의신청기간”이라 합니다)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신탁약관의 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6) 수익자가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4) 및 간접투자자산운용법령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의결권 행사]

(1)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가.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다.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2)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가.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주총일 5일 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나.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101조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3) 자산운용회사는 주총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총일 5일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총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총일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 방법에 따라 그 주총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_____

⋮ _____

.

□

.

□

()